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대폭 강화

유해·위험작업을 도급하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의 위험성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를 총괄 관리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6월 1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를 수리하거나 청소·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의 유해성·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이때에는 단순하게 위험성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강구한 안전조치도 함께 시달 토록 했다.

정부가 이처럼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유는 화학설비의 정비·보수작업을 수급받은 업체가 해당 설비에서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폭발, 누출 등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무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관리책임이 사업주

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사업주가 선임(또는 지정)만 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았지만 이번 개정 이후에는 선임만 해놓고 이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도·관리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작동 부분에 돌기가 있거나 동력전달 및 속도조절부분,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갖고 있는 모든 기계·기구에는 위험부위에 덮개, 방호망, 울 등의 방호조치를 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양도, 대여, 설치, 사용을 금지했다. 참고로 기존에는 예초기, 원심기, 공기 압축기 등 6개 기계·기구에만 방호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국가 안전기준 등록 조정제도 도입

정부가 대형 안전사고, 교통사고, 자연 재해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한다. 감축 목표 관리제는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해 매년 사고 등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을 말한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감축목표 관리대상

에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3개 분야, 21개 핵심 안전관리 대책이 선정됐다. 21개 핵심 안전관리 대책에는 최근 잦은 사고로 우려가 높은 유해화학물질, 어린이 놀이시설, 성폭력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됐다. 또 매년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풍수해, 산불, 전기·가스사고, 붕괴사고, 물놀이 사고 등도 반영됐다.

유정복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21개 핵심 안전관리 대책의 추진 상황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안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국가안전기준 등록·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20개 부처별로 116개 법령에 근거하여 총 19,000여 건의 안전 관련 규정이 운용되고 있는데, 안전기준 상호 간 중첩·상이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일례로 화학물질인 '벤젠'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 분산 관리되고 있어 기업들이 혼란을 겪거나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각 부처별 안전기준을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여 Code 형태로 통합 관리하고, 관련부처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기준심의회를 설치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고용부, 6~9월 폭염대비 행정지도 강화 천명

고용노동부가 폭염에 대비해 6~9월 까지 고열작업장과 실외사업장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폭염 시 근로자가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할 경우 일사병, 열경련 등 건강 장해를 입게 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고열 작업장의 경우 냉방, 통풍 등을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한편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휴식이 보장되고 있는지, 또 소금이나 음료수 등을 제대로 공급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령될 시 건설 현장과 같은 실외사업장에서는 가장 무더운 시간대(오후 2~5시)에 작업을 중단하게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참고로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될 때에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 2일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한편, 고용부는 전국 사업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배포했다. 행동요령에는 폭염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규칙과 권고사항 등이 담겨 있다. 또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의 건강장애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게재돼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폭염이 지난해보다 더 빨리 오고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준수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야외에서 주된 작업이 진행되는 건설현장 등에서는 근로자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를 벗는 일이 잦다”라며 “이는 산업재해를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때문에 각별히 주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델명)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면서, 이 타워크레인의 운전석을 불법으로 제거하고 타워크레인을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무인시스템으로 불법 개조를 했다가 최근 주요 언론과 정부당국에 적발됐다.

현재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은 국교부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등록관리 중에 있다. 이에 해당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조종자격이 있는 자만 운전이 가능하다. 반면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은 고용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기구로 관리 중에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타워크레인은 리모컨으로 조종이 가능하고 별다른 조종자격 규제도 없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개조의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 안전성이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사고도 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무인 경량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근로자 39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와 고용부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장비의 부실한 안전관리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불법 개조행위 집중단속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국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도 감독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불법 개조 방지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불법개조로 인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용부·국교부 ‘타워크레인 불법개조 행위’ 집중단속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합동 단속에 나선다. 고용부와 국토부는 공동으로 타워크레인 불법 개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개조장비의 건설현장 반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6월 3일 밝혔다.

이들 부처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형 크레인을 3톤 미만 소형크레인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개조 과정에서 변칙으로 불법개조를 하거나 미등록 크레인을 개조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서울 강남의 한 건설현장의 경우 최대하중이 8톤에 달하는 KTC-608(모